종합소득세, 이 정도는 알고 신고하자

신한은행 PB고객그룹 세무사 박상철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가 딱 버티고 있다.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항상 궁금한 것 투성이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상담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질문 받는 5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해서 세테크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1〉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모든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야 하는가?

1년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①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 ②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③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매년 통보해주는 금융소득 내역서를 보면 그 종류를 바로 알 수 있다.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해 일정세율(세금우대저축은 10.5%, 분리과세 장기채권은 33%)로만 원천징수하고 모든 세금관계가 끝난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개인의 1년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금융소득금액 중 4,000만원까지는 14%의 소득세율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금액만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기본 소득세율(8~35%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

한다는 것이다. 만약 1년간 다른 종합소득은 없이 오직 약 7,900만원 정도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발생했다면 금융소득을 지급 받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원천세 14% 외에 확정 신고시 추가로 낼 세금이 없다. 이는 연 5%의 이율을 가정할 때 원금 16억원에 해당되는 예금을 한 경우다.

〈2〉 급여소득은 올해 1월에 연말정산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설사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했다고 해도 확정신고시 급여소득은 제외해도 되는가?

급여소득자는 작년 1년간 받은 총 급여에 대해 올해 1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연말정산을 받았다. 그렇지만, 급여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되면 반드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작년 1년간의 급여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급여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랬다가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산세를 물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정산이 끝난 급여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율이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3〉 원고료, 강사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원천세 22%만 내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나 일시적으로 글을 쓰고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이런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즉,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가 800만원이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 된다. 기타소득금액인 200만원에 대해 원천세 22%인 44만원을 떼고 나면 실제 수령액은 956만원(=1,000-44)이 된다. 강사료나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총수입금액이 매년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본인의 1년간 기타소득은 지급한 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

〈4〉 급여소득자만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누구나 연금저축(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금융상품)에 가입 이후 매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매년 3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종교단체, 공익단체 등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기부금 공제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5〉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신용카드비용은 사업소득금액(또는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

그러나,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당국에서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서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 따라서,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사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신용카드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급여소득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에 유의해야 한다.